

발칙한 도발?

노순동 / 시사저널 기자

취재를 하다가 '강성유림'을 마주칠때면, 인간적 인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 이 분들이 변화하는 세태를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싶은 것이다. 지난 2000년 벌어진 이른바 '아방궁 사건'도 내게는 그런 사건으로 분류 될 것 같다.

얼마 전 이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다. 잠시 설명하자면, 서울 종로 공원에서 여성 미술가들이 가부장 질서 아래 억압당한 여성성을 들여다보자는 취지로 전시 퍼포먼스(아름답고 방자한 자궁)를 벌였는데, 유림들이 작품을 훼손하고 욕설을 하는 바람에 행사가 중단된 사건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여성 미술가 8인은,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작품 행위가 '도발' 행위임은 감지했을 것이다. 문제는 이 상징적인 도발에 대해 점잖은 유림들이 물리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점이다.

발칙한 도발에 말려든 셈

처음부터 유림 측이 작정을 하고 판을 깨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일 유림 지도부는 일부 격양된 회원들의 거친 행위를 제어하지 못했다. 이후 여성 미술가들이 전주 이씨 종친회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벌였지만 1심에서는 패했다. 이씨 종친회가 당시 사태를 본인들이 주도하지 않았다며, 슬쩍 발을 뺀 것이다.

취재 기자로서 당혹감을 느꼈다. 적어도 종친회 측이 법정에서도 여성들의 방자한 도발을 꾸짖고 자신들

의 행동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하지만 이씨 종친회 측은 "우리가 안 그랬다. 우리가 그랬다는 증거가 있느냐" 슬쩍 몸을 빼버린 것이다.

2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게 된 뒷 얘기를 들어보니 실소가 나온다. 여성 미술가 측 변호사에 따르면, 증거물로 제출된 현장 비디오에 공교롭게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씨 종친회 측 관계자가 찍혀 있었다는 것이다. 2심 법원은 이씨 종친회 측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점이 인정되며 미술가 1인당 1백만원씩, 총 8백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실 아방궁 전시는 그 자체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굳이 종묘에서 전시를 해야겠다는 여성 미술가들의 고집과, 많은 곳을 놔두고 그렇게 신성한 곳을 어지럽히려 하느냐는 유림 측의 주장 모두 수궁이 가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림들은 이 여성들의 발칙한 도발에 말려 들고 만 모양새가 되었다.

아마도 이 사건은 도발이 아무리 발칙하더라도, 그리고 여성들의 모양새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힘으로 그것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모멸의 추억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당사자인 여성 미술가 그룹 '입김' 측은, 3년에 걸친 법정 싸움을 기록으로 펴낼 계획이라고 한다. 그 내용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유림들의 심경도 궁금하다. 세상이 어찌되려는지 한탄하는 그들의 한숨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도 하다. ▶▶▶▶▶